

2000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0. 3.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 목적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II. 기본 계획

1. 지원 예산 : 13,150백만원 (계속과제 지원비 포함)

2. 지원 분야 : 전 학문분야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 방향

-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 중점지원
 - 연구계획서 중심에서 연구업적을 중시하는 심사체제를 확립함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
 - 패널심사와 우송심사를 병행하여 다단계 및 이중심사를 실시함
- 연구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의 정착 유도
 - 온라인 신청과 아울러 심사자 자동배정시스템 제도를 도입함
- 연구비 지원의 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연구결과물의 엄정한 평가 및 객관화 제고
 - 실행예산서의 검토·조정 및 중앙관리 실사 강화
 - 연구수행 일정 및 결과물 제출 안내 서비스 강화

4. 지원 규모 및 형태

- 지원 기준 : 과제당 연간 2,000만원 이내
 - ☞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연구비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연구비 신청한도액의 70%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
 - ※ 연구비 산정 기준은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 지원 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까지 인정

단, 2년 과제는 전체의 30% 이내 지원 예정

- 과제 구성 : 단독연구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 방법

- 대학의 총·학장 및 학회장에게 신청요강 발송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 방법

가. 1차 신청 (재단의 소정양식)

- 신청 방법 :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 온라인 신청함
※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활용함. 연구비 신청 연구자는 학술연구자 정보DB에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 마감 : 5개 지역별로 구분 접수

구 분	서울 대학이외 기관	경남·북 (부산,대구,울산)	전남·북, 제주 (광주)	충남·북 (대전)	경기·강원 (인천)
마감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 온라인 신청은 4월 17일부터 가능함.

※ 대학의 제2 캠퍼스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접수 마감은 당일 21:00까지

나. 2차 신청 (연구계획서 및 대표 논문)

- 신청 대상 : 연구업적심사를 통과한 신청 연구자 (심사후 통보 예정)
- 신청 방법 : 재단의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소속 기관 기관장이 일괄 신청
- 신청 서류
 - 연구계획서(재단 소정양식) 6부
 - 최근 5년간 대표적인 연구논문 2편 사본 각 1부
- 신청 마감 : 연구업적심사 결과 발표시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연구업적심사 결과 공고(예정) : 5월 30일 경

3. 신청 자격 및 요건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해당자 중

- 국내의 대학(교) 소속교원
- 국내의 학술연구기관·단체의 소속연구원
- 대한민국 학술원법 제13조 및 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학술원, 예술원이 추천하는 학문·예술에 진력하는 과학자 및 예술가로서

☞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 : '95.1.1~'99.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95.1.1~'99.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 포함)이 반드시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요망(재단 홈페이지의 참여광장 → 제안코너 이용)

※ 2002년부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진흥재단 전국규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계열은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도록 상향 조정할 예정임

4.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연구비 포함)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 의파견 수혜자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선도연구자 지원사업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0.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주도의 대형연구사업 책임자는 동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 : 교육부 BK21사업 단장, 과기부 창의과제, NRL, SRC, ERC, RRC 등)
- ☞ 교육부 BK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1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 절차 및 내용

구 분		심 사 내 용	주 관
제1단계 요건심사		• 신청서에 대한 행정 요건 심사	재 단
제2단계 연구업적심사		• 연구 업적의 수준 • 학문발전의 기여도	패널심사단 (지원예정의 200%이내 선발)
제3단계 전공심사	연구계획서 심 사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적의 명료성 •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비의 적정성	전공심사단 (과제당 5인의 우수심사)
	대표논문심사	• 대표논문의 수준 •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패널심사단
제4단계 종합심사		• 예산 배분 •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

2. 지원과제 선정

- 2,3단계 심사결과 고득점순위에 의하여 학문분야별로 선정

- 학문분야별 형평성을 고려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 방법 : 실행예산서 접수 후 소속기관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 시기

구 분		1년 연구과제	2년 연구과제
1차	시기	지원과제 확정후	지원과제 확정후
	금액	지원결정액 100%	1차 연도 지원결정액
2차	시기	—	중간보고 평가후
	금액	—	2차 연도 지원결정액

2. 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중앙관리해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거나 허위로 한 때
- 당초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1. 중간보고서(다년과제에만 해당)

- 제출시기 : 연구개시후 10개월 이내
- 제출자료 : 재단의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 정도 및 차기 연구계획을 평가한 후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2.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자료
 - 연구결과 논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게재 요청된 논문) 또는 학술저서(원고)
 - * 학술지 투고접수증 첨부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사용내역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논문초록
- ※ 위의 자료는 한글 버전 3.0 이상으로 작성하여 E-mail(result@ms.krf.or.kr)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공동연구원도 포함)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 지원을 제한함.

3. 연구결과물

가. 발표에 대한 책무

선도연구자 연구과제 수혜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나. 제출 시기

- 국내학술지 및 전문학술저서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
- 해외학술지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결과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수혜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0-○○○○○)”

다. 연구결과 미발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연구비 포함) 지원을 제한함.

4. 연구결과 사후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대학 등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 ※ 금년도부터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은 재단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급은 경고 및 3년, D급은 경고 및 5년간 연구비 지원 대상 제외.

Ⅶ. 기타 사항

- 심사 학문분야 코드는 재단에서 정한 학문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 및 code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바람.

제출 및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압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3팀

TEL (02)3460-5592~5 FAX (02)3460-5600

<붙임>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 · 집행기준
①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석·박사 과정)의 수당	- 석사과정생은 20~40만원/월 - 박사과정생은 30~60만원/월
②연구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월 15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 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왕복항공료와 1개월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특허출원비 등)	
③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게재료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연구비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문헌비/출판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연구결과물의 출판에 필요한 경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	-품목,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실제 소요액

※ ②항목은 국외여비를 제외하고 300만원 이내, 국외여비가 포함되는 경우 400만원 이내만 인정